

2020년 용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

- ①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
③ 일본 수출규제 영향 사업장(A등급이상)은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선정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 고
■ 공통적용 항목	80점	
① 사망사고 감소 사업 참여 사업장(패트롤 등)	10점	• (신설) '19~'20년 기술지도 사업장
② 투자공정의 유해·위험도가 높은 사업장	15점	• 재해율 통계 : 지역별 300인 미만 확정통계 사용 • 소업종기준 재해율 상위 10개 업종 선정하여 배점
③ 고용노동부·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·점검, 기술지원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	15점	•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
④ 고용증가 사업장	5점	• 신청 전 1년 근로자수 비교
⑤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(해당 근로자 1명당 2점, 최대 5명인정) • 근로계약서, 산재장해보상금 지급확인서 등 확인	10점	•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수급 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
⑥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	10점	•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강소기업인정 일학습병행제(인정유효기간 내) 등 우수인정사업장 • 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 할 수 있을 경우 인정
⑦ 법 제84조 및 제89조와 영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의구입 또는 안전인증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	10점	
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	5점	• '19~'20년 공생협력 참여 협력업체
■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	20점	• 일선기관 별 추가 구성
⑨ 최근 3년간('17~'19) 재해발생 사업장 • 재해 1건당 3점, 최대 10점	10점	• 사업장외교통사고, 동물상해, 폭 력행위, 채육행사사고 등 제외
⑩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	10점	
계	100점	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항목 순번→자율항목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
※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당해연도 용자신청 접수 불가